



■ 경찰대학장 권두언

21세기 경찰학의 메카로 우뚝 서기 위해

경찰대학장 치안정감 김정식



경찰대학은 지난 1979년 경찰대학설치법이 제정되고, 1981년 첫 신입생을 받은 이후 전문성과 창의성을 두루 갖춘 경찰인재 양성과 경찰간부육성의 산실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우리나라 경찰교육의 메카로서 우뚝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이제 올해 경인년은 대학 설립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공자는 논어 위정편(爲政篇)에서 '30세가 되어서 학문의 기초가 확립되었다'고 했습니다. 30년이란 세월은 '三十而立'이란 말이 의미하듯 학문적 기초를 탄탄히 세우는 나이인 바, 우리 경찰대학도 그 기틀을 굳건히 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상(飛翔)을 단단히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학을 둘러싼 내외부적 환경은 간단치 않습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연구 풍토 진작, 그리고 대학 혁신에 대한 외부의 압력이 거세어지고 있어 어떤 의미에서는 위기상황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위기(危機)란 말이 함축하듯 그 속에는 기회(機會)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보다 적극적·진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학 전체 구성원이 일치단결하여 비상한 노력을 통해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경인년은 연구발전의 디딤돌을 건설해 다지기 위한 변화와 혁신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해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대학이 경찰학·범죄학의 메카로 우뚝 서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심으로 대학이 안고 있는 당면 현안들에 대해 선택과 집중전략에 의해 개선방향이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경찰대학은 치안현장과 밀접히 연계된 교육방향을 가지고, 자신의 영역과 사무실 밖을 볼 수 있는 다기능(Multi Player) 경찰공무원을 육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시스템과 제도를 혁신하고, 21C에 요구되는 연구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진취적인 연구풍토 진작이 필요합니다.

둘째, 특히 연구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경찰학의 메카라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최고의 연구 역량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학 내 연구풍토를 진작하여 다양한 경찰학 분야의 전문적인 연구 활동이 활성화 되어 경찰학의 각 분야별로 지식공장(Knowledge Factory)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경찰 관련 학술대회와 세미나를 주도하여 경찰 관련 분야의 학문적 이슈를 생산하고 확산하는 학문 리더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이러한 연구 성과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경찰학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논문이 경찰대학 도서관에 있다는 인식이 당연히 될 정도로 경찰학 연구의 허브(Hub) 기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대학은 연구공동체의 집합임과 동시에 연구 성과가 집적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대학은 명실상부한 21세기 경찰학의 산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건강한 대학공동체를 부활하기 위해 소통과 화합을 기반으로 대학이 경찰발전을 위한 이론적 산실 역할을 극대화하여야겠습니다. 동시에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상 확립과 신뢰받는 경찰 구현을 위해 인성·덕성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맞춤형 인재를 육성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치안정책연구소는 경찰조직 내 유일한 치안정책 전문 연구기관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소장님 이하 전 연구관들이 합심하여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큰 축을 담당하여 주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PSI](#)

■ 용역연구과제 논문요약

미래 치안환경의 변화와 경찰의 대응역량 강화

김성언 교수
경남대학교 행정·경찰학부

연구의 필요성

이 연구는 국내외 치안환경을 진단하고 미래의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거시적인 수준에서 새로운 치안수요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들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치안수요를 범죄를 포함하여 사람들의 삶의 질과 안녕에 위해가 되고 사회질서를 침해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경찰의 사명은 이러한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이 발발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피해의 원상회복에 노력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이론적 논의와 연구방법

미래의 치안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범죄'(crime) 중심적 접근에서 '위험'(risk) 중심적 접근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위험사회(risk society) 개념은 이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현대의 위험은 종류만 다양한 것이 아니라 피해 규모와 범위 또한 엄청날 수 있어 사후적인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위험관리의 논리는 경찰활동에도 영향을 미쳐 사후 반응적인 것으로부터 사전 예방적인 것으로의 이행을 촉구하게 된다. 이러한 이행은 위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 수집활동과 그에 따른 예방활동을 강화하게 함으로써 경찰에 대한 치안수요는 그만큼 증대하게 되는 것이다.

미래의 치안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유발하는 거시 수준의 구조적 요인과 미시 수준의 행위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인구와 경제는 거시-구조 수준에서 위험과 치안수요를 유발하는 기본적인 요인이다.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범죄의 기회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과학과 기술은 위험사회론에서 제기하는 위험의 새로운 근원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정보화 역시 같은 맥락에서 위험을 산출하는 주요한 인자로 이해할 수 있다. 현대사회의 위험은 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조직화 원리, 즉 세계화에 의해서도 야기될 수 있다. 세계화는 잠재적 위험요인들인 인구와 자본, 물자, 과학, 기술의 이동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 요인에 의해서도 위험이 유발되기도 한다. 문화적 다양성, 가치관의 차이가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 치안환경의 진단과 분석을 위해서는 위험사회의 맥락 속에서 인구변동과 경제발전, 세계화, 정보화, 다양화가 독립적으로 혹은 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유발하는 치안의 수요 측면과 이에 대한 경찰활동의 공급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로 규정하고 위험사회 속에서 치안환경의 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인으로 인구, 경제발전, 정보화, 세계화, 다원화로 상정한 뒤, 각 변인들의 특징과 이로부터 유발되는 치안수요 및 경찰활동의 과제들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한국 사회는 급격한 변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위험사회의 다양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생활수준의 향상, 의료기술의 발달, 혼인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국제적 인구 이동 등으로 인해 인구 구성에 있어 중요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혼인 및 출산태도의 변화 등에 영향을 받아 가구원의 크기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 또한,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지속되면서 농촌의 공동화 및 도시의 인구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주거 형태도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주택 및 주거의 형태는 경찰의 순찰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위험사회의 전개로 인해 장애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화의 여파로 인해 우리 사회의 인구 구성은 다양성을 더해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찰활동에도 인구적·인종적 다양성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정보사회의 도래는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온라인 정치 참여의 기회를 확장시키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이버 스토킹,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 모욕죄 등과 같은 새로운 일탈 혹은 범죄유형의 기회구조로도 작용하고 있으며, 사회갈등의 새로운 공간으로 변모되고 있기도 하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의 경제규모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 왔으나, 실업의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한 계층적 양극화는 사회갈등의 큰 불씨가 되고 있다. 다른 한편, 사회적, 개인적 부의 증가는 재산범죄와 같은 범죄발생의 기회구조로 작용함으로써 치안수요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다 직접적으로 위험사회의 다양한 징후들은 경찰의 치안수요를 증가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범죄 상황은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 사기 등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들은 줄어들 줄 모른다. 청소년 인구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범죄자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여성과 노인 범죄의 증가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체류 외국인,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도 점차 증가하는 양상이다.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수준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결과적으로 대국민 경찰신뢰도는 높지 않다.

이밖에도 각종 사고와 재해 및 재난, 질병 등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변동과 위험사회의 등장에 걸 맞는 위협에 대한 사전 예방적 치안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경찰의 대응력 강화방안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과 관리, 지역사회 현실에 부합하는 지역화된 치안활동의 전개, 투명하고 신뢰할

만한 경찰행정, 적법절차와 인권보호, 경찰의 전문성 제고, 치안수요에 기초한 적정 인력과 자원의 유지 등은 향후 한국 경찰이 당면한 주요 혁신 과제들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제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 및 조직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인적·물적 토대를 통해 국민들과 적절히 소통해야만 한다.

첫째, 위험사회의 치안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경쟁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범죄와 사고 및 각종 재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선진화된 치안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①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의 수집과 분석, 정보의 체계적 관리, ② 수사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수사시스템의 과학화·현대화, ③ 인권 지향적 경찰활동을 위한 시스템의 정비, ④ 국제적 범죄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과 소통하는 경찰이 되어야 한다. ①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부응하는 치안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춰야 한다. ② 이를 위해, 치안서비스에 대한 욕구분석과 고객만족도 평가, 그리고 이를 통한 서비스의 개선 등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치안서비스의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한다. ④ 민-관 협력 체계가 강화됨으로써 '열린' 경찰활동 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신뢰받는 경찰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능력을 갖춘 재능 있는 인적 자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신규 채용될 인력규모는 치안수요와 연동된 체계적인 분석 시스템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③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④ 치안서비스 전달 조직이 개선되어야 한다. ⑤ 여성·외국국적자 등 인력 구성의 다양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⑥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⑦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경찰과 접촉하는 시민들이 존중받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시민 응대 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⑧ 경찰관의 비리가 척결되어야 하며 경찰 청렴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PSI**

■ 위촉연구과제 논문요약

무동기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

이 성 식 교수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연구 목적

최근 무동기 범죄로 명명되는 사건들이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무동기 범죄는 ‘묻지마’ 혹은 ‘화풀이’ 범죄로도 명명되는 범죄로 불특정다수를 향해 저지르는 끔찍한 범죄이다.

하지만 무동기 범죄는 학술적 용어는 아니며 국내외 학술연구에서 그 정의나 특징에 대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 연구는 무동기 범죄에 대한 개념정의를 제시함과 아울러 최근년도에 발생한 무동기 범죄의 사례와 실태, 특징을 알아보고 그 문제의 특성에 비추어 바람직한 대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주목한다.

무동기 범죄의 정의

무동기 범죄를 용어 그대로 의미를 파악해본다면 아무 동기가 없는 범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범죄가 조금이라도 어떠한 이유가 있듯이 어떠한 이유와 동기 없이 저지르는 범죄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무동기 범죄는 동기가 없는 범죄가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범죄라는 의미에 보다 가깝다. 즉 무동기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가 아무 이유 없이 피해를 당하는 불특정대상 범죄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무 관련이 없는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또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무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없이 피해자가 피해를 입는 범죄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무동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충격과 두려움을 주는 끔찍

한 사건을 빗대어 칭하는 것으로 강력범죄이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낳는 범죄로 국한할 수 있어 다수범죄, 연쇄범죄와도 가깝다.

하지만 무동기 범죄는 반드시 강력범죄이지도 또 다수의 피해자를 전제로 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무동기 범죄는 불특정대상 범죄와 그 개념에서 가장 가깝다.

무동기 범죄의 대표적 사례와 최근 실태

무동기 범죄가 반드시 강력범죄는 아니지만 무동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끔찍한 사건이라는 점이 보다 일반적이어서 이 연구는 무동기 강력범죄에 주목했다.

이 연구에서는 무동기 범죄의 대표적 사례로 유모씨에 의한 2003년 9월 노부부 살해사건 이후 여(女)출장마사지사 살인사건 등 10개월 동안 저지른 연쇄 살인사건과 강남구 논현동 고시원 방화 및 살인상해사건, 무동기 강간으로 2002년도 철가방 발바리사건, 그리고 무동기 방화사건으로는 2003년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을 들어 그 사건을 분석했다.

아울러 경찰청의 도움으로 2008년도에 발생한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그 중 본 연구에서의 무동기 범죄의 개념에 부합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그 실태를 파악했는데, 2008년도에 총 16건의 무동기 범죄를 확인했고, 무동기 살인이 5건, 무동기 상해가 5건, 무동기 방화가 6건이 파악되었다.

무동기 범죄의 특징

무동기 범죄의 사건분석과 사례를 통해서 볼 때 무동기 범죄의 원인과 특성은 다음의 세 가지 특성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첫째는 어린 시절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부모의 이혼이라든지, 부모의 폭력과 무관심으로 인한 욕구불만, 그리고 오래된 좌절의 경험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범행당시에는 생활고의 경제적 문제나 가정불화, 해고, 실직 등의 촉발적 사건이 있었다는 점이다. 셋째는 무동기 범죄자는 주로 외톨이어서 주위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또 그들로부터의 정서적 지지가 부족한 특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즉 어려서부터 불우한 환경과 좌절, 실패 속에서 생활고나 가정불화, 해직 등의 생활사건으로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분노에 차있는 가운데 범죄가 촉발되고 그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위의 따뜻한 정서적 지지가 있었으면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 사회적 외톨이라는 특성으로 무동기 범죄로 폭발했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자신의 처지가 사회의 탓이라는 잘못된 귀인경향을 가짐으로써 사회에 대한 불만과 적대감을 사회구성원 아무에게나 표출한다는 점이었다.

무동기 범죄자는 어릴 때의 불우한 가정환경(부모의 이혼이나 부모로부터의 학대 등)이외에도 사코패스의 반사회적 성격을 가져, 죄책감과 타인에 대한 연민이 부족하고, 충동적이며, 자신의 이득과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높다. 아울러 무동기 범죄자는 예전부터 범죄를 저질러 왔던 전과의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그러한 개인적 성향이나 환경적 특성도 중요하지만, 무동기 범죄는 사회전반의 경기침체나 사회양극화의 불평등 심화의 사회구조적 여건에서 더욱 발생한다는 점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경기침체나 사회양극화와 같은 불평등의 사회여건에서 생활고에 시달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더욱 증가하게 되고, 그러한 자신의 처지는 사회 때문이라는 불만과 원망, 그리고 분노가 무동기 범죄로 표출되기 때문이다.

무동기 범죄의 대책

이 연구에서는 무동기 범죄의 대응책으로 크게 경찰의 대책, 사법부의 대책, 사회차원의 대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경찰의 대책으로는 무동기 범죄의 초기 대응과 과학수사의 중요성, 그리고 상호지원의 수사시스템을 강조했고, 앞으로도 총기류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무동기 범죄에 대한 통계자료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둘째, 사법부의 대책으로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대책과 사회내 고위험 범죄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여러 기관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무동기 범죄와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아울러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대책으로는 사회양극화의 해소와 빈곤층과 실직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및 사회적 지체계의 구축, 그리고 인명경시나 폭력문화의 개선 및 마스크의 가이드라인 필요성을 제시했다. [PSI](#)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치안정책연구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치안정책리뷰는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www.psi.go.kr).

치안정책리뷰 편집팀

편집팀장 : 이상수 연구관

편집위원 : 김동혁, 선승석, 여태수, 이형범 연구관

치안정책리뷰 편집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1길 29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446-703)

- 전화: 031-285-2616 (경비) 61-2376
- e-mail: webmaster@psi.go.kr

■ 책임연구과제 논문요약

전의경 전역자 경찰관 특채의 정당성 관련 연구

선 승 석 경찰연구관
치안정책연구소 사회안정대책연구실

들어가며

경찰에서는 2009년부터 새로 채용하는 경찰공무원(순경) 중 일정 인원을 ‘전의경으로 전역자 사람중’에서 선발하겠다고(이후부터는 ‘전의경 특채’라 함)고 발표하였다. 그리하여 2009년 3월에는 총 선발인원 1,206명 중 240명, 7월에는 총 선발인원 1,038명 중 252명을 각각 전의경 특채하였다.

전의경 특채 발표 이후 일부 언론에서 ‘그들만의 리그’ 또는 ‘채용기회 축소’라고 비판하였으며, 전의경 감축에 대비한 경찰청의 대책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도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연 전의경 특채 제도가 위에서 언급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전의경 특채 제도 일반

1967년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전투경찰순경 제도가 생겨났다. 해안경계 등 주로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다가 1980년대 집회시위 급증으로 치안력이 부족해지자 의무경찰제도가 나타났다. 이 둘을 합쳐 ‘전의경’이라 통칭하고 있다. 현재 경찰에서 운용 중인 전의경은 약 3만여명으로 대부분은 전투경찰대, 기동대, 방범순찰대, 112타격대 등 부대단위에서 근무하고 있고, 일부는 경찰약대, 운전요원, 행정보조요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다.

전의경 특채 인원은 2008년부터 시작된 ‘전의경 감축 및 경찰관 대체계획’에 따라 증원되는 경찰관 정원의 20%로 한정하고 있다. 2009년 상반기 선발하였던 240명은 2009년 대체경찰관 정원 1,206명의 20%이며, 하반기 선발한 252명은 2010년 대체경찰관 정원 1,260명의 20%인 것이다.

응시는 전의경으로 전역한 자만이 가능하며, 면접 전일까지 전역자 신분을 취득할 수 있어야만 응시 가능하다. 일반 순경공채와는 달리 면접에서 전의경 복무기록을 참조하여 선발토록 하고 있다. 이 외의 채용과정은 일반 순경공채와 동일하다.

경찰청에서 전의경 특채를 실시하기로 한 이유는 크게 ①전의경 사기진작 및 모집률 제고, ②전의경 근무경험 및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듯 전의경 특채 시행 이후로 전의경 사기진작이 많이 되고 있으며 모집률도 상당히 향상되었다. 다만, 경험과 지식 활용도는 전의경 특채 인원의 일선 배치 후 활동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의경 특채가 전의경 감축을 막고자하는 경찰청의 의도가 있다는 일부 언론의 의견은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대체경찰관 정원으로 특채를 하였지만, 특채 제도 어디를 살펴 보더라도 특채로 인해 전의경 감축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전의경 특채의 법률적 문제 검토

전의경 특채와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크게 ①현행 법률상 전의경 특채가 가능한 지 여부, ②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 여성차별금지 등을 침해하지 않는 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우선, 전의경 특채가 현행 법률상 시행 가능한 제도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현재 경찰행정학과, 외사요원 특채의 근거 법률로 경찰청은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3항과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를 들고 있다.

이 중 전의경 특채의 근거 조항으로 동법 제8조 제3항 조항을 살펴보면,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 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임용하는 경우'로 적시하고 있다. 또한, 동시행령 제16조에서는 '특채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지만, 전투경찰순경을 순경으로 임용하는 경우는 그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과 시행령은 전의경 특채의 근거 법령으로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헌법상 권리와 충돌하지 않는 지 여부이다. 우선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살펴 본다. 전의경 특채는 그 목적이 합리적이고, 일정 비율만큼 제한적으로 선발하여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자격증을 주도록 한 것은 일반국민들에게 지나치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지만(2003헌마715), 경력자에게 관세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는 합헌(2000헌마364)이라고 한 헌재 판단도 이러한 취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공무담임권과 관련하여, 전의경 특채는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법률 근거에 의한 것이며, 공익·성과주의·능력주의에 따라 제한을 두고 있어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일방적인 군제대자 가산점 부여는 위헌이지만, 동점자 처리시 독립유공자 우선권 부여와 자격증 종류에 따른 가산점 차등부여는 모두 합헌으로 본 헌재 판단도 맥락을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

평등권 및 여성차별금지와 관련하여, 평등권 침해는 비례의 원칙과 자의(恣意)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총 선발인원의 20% 특채 인원은 나머지 일반 응시자(여성 포함)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 일반공채 합격자 중 전의경 출신자의 비율은 30%를 넘고 있는 상황이고, 능력주의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자의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등권 침해라는 비판은 부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의경 특채의 행정적 문제 검토

전의경 특채와 관련하여 행정적인 면에서는 크게 ① 선발 시기를 공채와 같이 할 것인지 여부, ②면접시험의 정당성 확보 문제, ③특채 일정의 예측 가능성 확보 문제, ④전의경 특채인원의 활용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선발시기와 관련, 특채와 공채를 다른 날에 선발할 경우, 전의경 전역자는 특채와 공채를 따로 응시할 수 있는 반면, 같이 선발할 경우 전의경 전역자의 경우 특채와 공채 중에 선택하여 응시해야 한다. 2009년 상반기의 경우 다른 일정으로 하반기는 같은 일정으로 선발하였다. 특채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다른 일정으로 선발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는 채용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 보인다.

또한, 면접시험에서 전의경 복무기록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경찰청에서는 전의경 복무기록을 수기에서 전산화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추후 이 자료를 참조해 부적격자는 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험 응시자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채용일정과 계획을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채제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특채된 인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치며

경찰청의 필요에 의해서 전의경 특채 제도가 신설되었지만 실제 이 제도는 1995년까지 시행된 적이 있었으며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은 각 기관의 필요에 의해 현재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이다.

앞서의 검토 결과 현재의 전의경 특채는 현행 법률상이나 헌법상의 권리 침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후 이 제도가 논란의 소지없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경찰 인력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PSI**

■ 책임연구과제 논문요약

노인범죄 발생추이 분석과 대책

유 지 응 책임연구원
치안정책연구소 생활안전대책연구실

연구의 필요성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 고령화는 여러 가지 형태의 노인문제들을 수반한다. 노령화 사회가 낳은 여러 가지 노인문제들과 함께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노인 범죄의 증가이다.

이 연구는 노인 범죄의 유형별 발생 추이 분석을 통해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 노인범죄의 흐름과 변화에 주목하고, 노인범죄 발생 추이 분석에 기초하여 경찰 차원에서의 노인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과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노인범죄의 발생추이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서 노인 연령층의 범죄율이 낮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10여년의 기간 동안 전체 범죄 발생빈도에서 노인범죄 발생빈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노인범죄 발생빈도는 전 연령층 평균에 못 미치지만, 노인범죄증가율은 전 연령층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범죄는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서 발생빈도는 낮지만, 그 증가율은 매우 높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난 1997년과 2007년 두 해의 전체 범죄자수와 노인범죄자수를 단순 비교해 볼 때, 전체 범죄자수는 1996년 1,922,549명이던 것이 2007년에는 1,989,862명으로 소폭 늘어났을 뿐이다. 그러나, 노인범죄자수는 1996년 34,492명이던 것이 2007년에는 84,028명으로 약 2.5배 증가하였다. 또한 지난 1997년을 기준으로 2007년까지 각 년도별 증가율 평균을 산출한 결과, 전체 범죄자수는 평균 9.9% 증가

하였으나, 노인범죄자수는 1997년을 기준으로 평균 84.3% 증가하였다. 지난 10여년의 기간 동안 전체 범죄 발생빈도에서 노인범죄 발생빈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노인범죄 증가율은 전체 범죄 증가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노인형법범죄 가운데 1997년과 2007년을 비교할 때 인구10만명당 범죄자 대비 노인범죄자 비율 증가 폭이 큰 범죄유형은 살인(1997년 28.3% → 2007년 54.6%), 도박(1997년 17.3% → 2007년 41.7%), 폭행(1997년 11.3% → 2007년 27.0%), 절도(1997년 7.6% → 2007년 26.3%) 범죄 등이다. 이러한 범죄 유형들은 최근 10년 사이 상대적으로 범죄 증가율이 높은 유형들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은 이러한 범죄 유형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노인범죄의 특성과 예방대책

1. 노인폭력범죄 대책

노인 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노인 폭력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은 노인활동 공간을 중심으로 하여 그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노인 폭력 범죄가 가정폭력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는 외국의 연구사례에 기초하여 가정폭력 대책과 연계하여 노인폭력 예방대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들 사이에 음주와 놀이가 이뤄지는 공간들로 공원 주변, 경로당 등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발생지역으로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활동은 공원이나 노인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그 활동은 이러한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전담경찰관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상담활동을 벌이거나 분쟁의 소재를 분석하여 사전에 제거하는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2. 노인 절도 범죄 대책

노인범죄는 재범율이 높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노인 범죄유형별로 볼 때, 절도범죄의 재범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노인범죄가 재범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내의 전담경찰관은 전과 경력이 있는 노인들에 대한 관리와 정보 수집 활동을 상시적으로 행하고 그들에게 범죄 유발 요인이 있는지를 살피는 적극적인 경찰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의 경찰활동은 직접적으로 범죄 유발 요인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노인 복지 관련 단체나 전문가들과의 매개자 역할도 포함한다.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독거노인 보호 관리를 담당하는 전담경찰관이나 '1로(老) 1경(警)'제도 하에서 담당 경찰관이 범죄예방 활동을 벌일 수도 있을 것이며, 사회복지적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지역사회의 사회복지단체나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매개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3. 노인범죄 예방 전담팀 구성

노인범죄예방을 위한 전담팀 구성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리사회는 급속한 노령화 추세 속에서 노인의 빈곤, 부양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립감과 소외, 좌절감 등 노인문제는 갈수록 심화될 것이며, 이러한 문제 상황을 배경으로 한 노인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범죄 동기와 노인범죄자 특성에 대한 분석 능력을 갖춘 전문 범죄분석가를 포함한 전담팀을 각 경찰서 단위로 편성하고, 상습 노인범죄자 관리, 우범지역 순찰, 지역별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 대책 수립, 노인범죄피해 상담, 지역내 경노당이나 보호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노인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노인범죄 예방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4. 노인 자원봉사자를 통한 범죄예방활동 지원

스쿨폴리스의 개념을 노인범죄 현장에 도입하여, 현역에서 은퇴한 전직 경찰이나 전직 교사 등을 노인범죄 예방을 위한 실버폴리스 자원봉사자로 모집하고, 지역사회내의 경로당을 비롯한 노인시설, 공원 주변 등 노인밀집지역, 기타 노인범죄 피해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경찰이나 교직에서 은퇴한 노인들로 하여금 같은 또래의 노인들을 상담하는 상담자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실버폴리스로서 활동하는 당사자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켜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노인들이 겪는 사회적 고립과 소외감을 경험하는 노인들을 같은 처지에 있는 은퇴 노인들이 상담자 역할을 해 줌으로써 보다 친밀한 관계에서 상담활동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의 노인범죄 예방대책

이상 최근 노인범죄의 특성과 이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을 정리해 보았다. 한편, 노인범죄의 보다 근본적인 예방 대책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사회복지적 대책의 추진을 요구한다.

노인범죄가 일어나는 사회적 배경에는 노인문제가 있으며,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대책과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경찰에서도 노인범죄의 원인을 규명하고, 범죄 유형별 특성과 대책수립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 성과의 축적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노령화 추세는 노인문제와 노인범죄가 갈수록 심각해 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 노인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PSI**

■ 경찰 관련 법안 공포에 따른 쟁점사항 정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에 따른 대응방안

신 승 석 경찰연구관
치안정책연구소 사회안정대책연구실

법률 제정 과정

2010년 1월 25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지난 2009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률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올해 7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실제 이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지금부터 약 15년 전인 1994년, 경찰에서는 DNA 정보를 이용하려는 법률의 제정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경찰이 제시한 법률안과는 별도로 DNA 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였고, 경찰이 제시한 법률안을 반대하여 결국 무산되었다. 이후 약 10년간 경찰과 검찰은 DNA 정보의 관리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에 차이를 보였고, 관련 법률의 제정 또한 지연되어 왔었다. 이후 17대 국회에서는 경·검이 합의하여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쉽게도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이번 법률이 어렵게 제정된 만큼 그 시행을 위해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동법 시행과 관련하여 ‘법률의 주요 내용, 경찰의 역할, 시행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이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법률의 주요 내용

동 법률이 제정된 목적은 살인,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DNA신원확인 정보를 미리 확보·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강력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등록된 DNA신원확인정보와 비교를 통해 신속히 범인을 특정·검거함에 있다고 하겠다. 또한 무고한 용의자를 수사선상에서 조기에 배제하여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DNA신원확인정보가 등록된 사람의 재범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동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관리대상 범죄를 재범율이 높은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방화, 절도, 약취유인,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11개 유형의 범죄로 한정하였다.

② DNA 종류와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였다. 경찰은 대상범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구속 피의자 및 범죄현장 등에서 채취한 DNA 정보를 관리토록 하고, 검찰은 대상범죄로 형이 확정된 수형인 등에 대한 DNA정보를 관리하되, 서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DNA감식시료의 채취는 영장에 의하여야 하고,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는 영장없이 채취할 수 있다.

④ DNA감식시료의 채취 방법은 ‘구강점막채취 등’ 대상자의 신체나 명예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DNA감식시료는 ‘피의자·수형인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한 때’ 폐기한다. 또한, 그 정보는 ‘수형인 등이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시, 구속된 피의자 등이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처분이 있는 경우’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⑥ 국무총리 소속 하에 DNA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를 둔다. 위원들은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각 분야에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발하여야 하며, 임기는 3년으로 정하고 있다.

⑦ 업무목적 이외에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벌칙조항을 두고 있으며, DNA 정보를 관리하는 사무를 보는 사람이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벌칙조항 적용시에는 공무원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조항’까지 두고 있다.

경찰의 역할, 시행에 필요한 준비

이 법률에 적시된 경찰의 역할은 ‘구속 피의자와 범죄현장 증거물의 DNA 채취 및 감식, DNA 정보의 관리 및 폐기’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경찰은 영장에 의한 채취, 동의에 의한 채취를 할 수 있으며, 채취 방법과 관련하여 법(제9조)에는 구강점막에서 채취토록 하되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특히, 신체와 명예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만 채취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시행령 마련시에는 ‘구강점막 채취를 거부하는 경우, 신체적 조건으로 인해 구강점막 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대비하여 채취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DNA 감식이다. DNA 감식에 필요한 각종 시약 등 재료와 관련 장비를 우선 구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DNA 정보를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연구·개발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장비,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경찰 인력의 증원도 필요하다. 동 법률 시행과 동시에 이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져 완전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 장비, 시스템 등이 올 7월 전까지는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검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서둘러 마치는 한편, 인력확보, 예산집행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DNA 정보의 관리 및 폐기이다. 경찰과 검찰은 현재 법률상 DNA 채취 대상이 다르다. 경찰은 대상범죄로 구속된 피의자이고 검찰은 대상범죄로 형이 확정된 수형인 등이다. 정보 관리 측면에서만 본다면 중복 관리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법 제4조 제3항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연계하여 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경·검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고 있다. 세부적인 사항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시행령에서 정한 기관에 DNA 정보의 수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으며, 법률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감식 시료를 폐기하고, DNA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이 같은 업무를 위해서도 인력과 장비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치며

이 법률은 10년 이상의 논의와 노력 속에 만들어졌다. 법률이 공포된 현재, 경찰청에서는 법률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시행령 마련, 예산·인력 등의 확보를 위해 바쁘게 노력하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도 이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범죄 예방·수사를 위해 이 법률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PSI**

■ 경찰 실무사례 분석

‘차량용 차단기 파손 및 경찰상해사건(2009도11041)’ 판례분석 및 경찰조치 개선방안

여 태 수 경찰연구관
치안정책연구소 정책기획연구실

2010. 1. 14. 대법원은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주머니를 뒤지려는 경찰관을 상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로는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2009도11041)

현장에서 법집행을 담당하는 경찰로서는 상해죄 성립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단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위 사건에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지 못한 점은 경찰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위 사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경찰 법집행 방식의 개선방안을 검토해 본다.

사실관계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해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으로 아파트 주차장으로 진입하고자 하였으나 전자카드가 없고 경비원이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았다.

◎ 이에, 피고인이 강제로 차단기를 들어올려 차단기가 파손되었고, 이후 아파트 진입로상에 차를 방치한 채 인근 경비원·입주자 등과 다투던 중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다.

◎ 경찰관이 아파트 진입로를 막은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차량열쇠를 달라고 하자 불응하고, 경찰관이 피고인 주머니에서 차량열쇠를 꺼내기 위해 주머니 쪽으로 손을 뻗자 경찰관을 상해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1. 영장없이 주머니를 뒤져 열쇠를 꺼내려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위법 (원심판단과 동일)

사례에서 경찰관이 열쇠를 꺼내려는 행위는 경직법상 불심검문에 수반하는 소지품검사로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영장을 요하는 강제처분인 수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동의가 없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 전에 행해진 영장없는 수색은 위법하다.

나. 경찰관에 대한 상해는 정당방위의 상당성을 결여하여 위법 (상해죄 인정-원심파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경찰관이 차량열쇠를 꺼내려는 행위가 부적법한 것으로 저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을 상해한 행위는 부당한 범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상해죄를 구성한다.

실무상 문제점 -공무집행방해 관련-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견해는 유지하였다. 이는 경찰관이 차량열쇠를 달라며 주머니로 손을 뻗은 행위를 ‘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인 수색’으로 보았고, 이에 필요한 영장제시가 없었으며 영장주의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찰은 위 사례에서 차량 진입로를 막고 있는 차량을 이동시키도록 할 권한이 없는가? 사실 위와 같은 사례는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이다. 만일 이 경우, 영장주의가 관철되어야 한다면 실제 경찰작용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례에서 적법하고도 실효성 있는 경찰관의 공무집행 방법은 무엇일까?

현장에서의 바람직한 직무수행 방법

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위 사례에서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경찰관이 직무를 집행했어야 하는가?

1. 현행범인 체포 후 열쇠를 압수

피고인을 먼저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열쇠를 압수하였다면, 형소법 제216조제1항 소정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에 해당하여 압수는 적법하고 이에 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구체적으로 사례에 적용해 보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자 및 현장관계자들(피고인 포함)에게 경찰관 요청이유 등을 청취한 후 차량출입을 막고있는 피고인 차량의 이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지시키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을 일단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열쇠를 압수하여 차량을 이동시킨다.

2. 경찰상 즉시강제를 활용

‘경찰상 즉시강제’(sofortige Zwang)는 명령에 의한 사전 의무부과 없이 상대방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경찰목적 실현하는 작용으로, 목전의 급박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나 성질상 미리 의무를 명할 수 없는 경우에 행해진다.

학계에서는 견해가 나뉘지만, 긍정설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규정이 경찰권발동에 관한 ‘개괄조항(또는 일반조항)’으로 이를 근거로 보충적 성격의 즉시강제를 할 수 있다고 하며, 판례는 ‘개괄조항’을 긍정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으나, 사례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을 상대로 경찰상 즉시강제에 의한 조치임을 고지하고 주장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구체적으로 사례에 적용해 보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자 및 현장관계자들(피고인 포함)에게 경

찰관 요청이유 등을 청취한 후 차량출입을 막고있는 피고인 차량의 이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지시킨다.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을 상대로 현재 차량의 방치가 위법하며 사고유발 등 위험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을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거 강제조치(차량견인 또는 피고인이 소지한 차량키를 압수)할 것을 고지한다. 이후 피고인 차량을 견인하거나 차량키를 강제로 압수하고 이에 저항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체포한다.

맺는 글

법원의 판결은 일관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경찰)작용은 법률유보를 요구하며, 적법한 절차와 여러 가지 한계(비례의 원칙 등)를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찰은 각종 위법한 상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상황’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나 경찰권 발동의 근거 등을 다소 소홀히 다루어 온 측면이 없지 않은지 스스로 반성해 볼 일이다.

비록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한 경우라도, 경찰권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므로, 법이 정한 권한과 절차 그리고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선 경찰관의 ‘정의로운’ 직무집행이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경찰사기를 저하시키고 나아가 경찰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나 법질서 준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우리 경찰은 적극적 직무집행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되, 이에 적합한 방법과 절차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다. [PSI](#)

▶ ‘치안현장 탐구’는 실제 치안현장에서 발생하는 경찰실무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검토해 보는 코너입니다.

▶ 내용에 대한 의견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경감 여태수(2274, 031-285-0182)로 연락 바랍니다.

※ 이 글은 연구자의 개인적 견해로 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 현장 경찰관의 목소리

차량 운행 중 DMB TV 시청의 단속 필요성

경장 김 정 석

경기지방경찰청 하남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현장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자주 시민들로부터 “일부 차량에서 DMB TV를 시청하면서 운전 하는데 경찰관은 왜 단속을 안 하나요? 경찰관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건가요?”라는 항의성 질문을 받곤 한다. 내심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구나!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조금 당황했던 적이 있다.

운전 중 DMB TV 시청은 단속근거 등의 불비로 사실상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교통경찰관의 한 명으로서 현장근무 중 교통사고현장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며 뭔가 법적·제도적 대책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끼게 된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의 사고발생위험성은 통상 운전의 4배이며 운전 중 DBM TV 시청은 전방의 시야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제동거리가 길어져 휴대전화 사용 중 운전에 비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5배 높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의하면 DMB TV를 시청하며 운전하는 것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보다 더 위험한 것이며 운전자가 DMB TV를 보거나 DMB 폰을 사용할 때의 전방 주시율은 각각 50.3%와 60.6%로 DMB TV를 보지 않을 때(76.5%)보다 낮았고, DMB TV를 보면서 운전하는 사람은 차량이 좌우로 움직이는 폭(1.39m)이 정상 운전자의 좌우 움직임 폭(1m)보다 훨씬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운전 중 DMB TV 시청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으나 현재 단속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길거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주시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규정을 도입하여 운전 중 문자메시지 사용 등을 금지 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는 휴대전화 사용금지만을 운전자 준수사항으로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다.

차량용 네비게이션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그에 따라 자연스레 운전 중 DMB TV를 시청하는 기회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운전자는 운전 중 DMB TV 시청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운전 중 DMB TV 시청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행위임을 인식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금지규정을 시급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하여 운전 중 DMB TV 시청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꾸준히 알려나가야 할 것이다. [PSI](#)

- ▶ ‘현장제언’에 글을 보내주신 분들 중 채택된 분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 드립니다.
- ▶ 현장에서 느낀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앞으로도 일선 경찰관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연구소 인사

◆ 김녹범 총경 사회안정대책실 연구관 부임

2010년 3월 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3년간 (2007년~2009년) 주재관으로 근무했던 김녹범 총경이 치안정책연구소 사회안정대책실 연구관으로 새롭게 부임하였다. (☎경비 8-61-2174)

2010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과제 공모 완료

치안정책연구소는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09.12.28~'10.1.29까지 5주간 2010년도 연구과제를 공모하였다.

금년도 연구과제 공모에는 경찰청 각 국관 및 전국 지방청·경찰서에서 제안된 31개 과제가 접수되었는 바, 특히 금년도 경찰의 주요 현안업무인 G-20, 수사구조 개혁, 여성 및 청소년 보호 등과 관련된 과제들이 다수 접수되었다.

연구소는 이번에 공모된 과제들을 대상으로 3월중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관 동정

◆ 이상수 연구관(정책기획연구실)은 『수사연구』 2010년 3월호 특집 『경찰 감찰제도 개선』란에 “신뢰받는 경찰 구현, 어떻게 가능한가?-선진 외국사례를 통해본 경찰 감찰시스템의 발전방향”을 게재하였다. 또한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공공혁신과 자치경영 전문 월간지인 『공공정책21』 2010년 3월호에 “풀뿌리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 손실보상제도 도입방안”이란 주제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 송경호 연구관(안보대책연구실)의 연구보고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가 2. 17자 서울신문에 요약게재되었다. 또한, 2010년 2월 17일 KBS 라디오 한민족방송 “출발동서

남북” 전문가 진단 및 2월 23일 원음방송 시사프로그램 “시사1번지”에 출연, 그간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탈북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제안하였다.

◆ 유동열 연구관(안보대책연구실)은 2010년 2월 25일 부산경찰청 보안경찰 워크샵에서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의 이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또한 2월 23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개최된 “한국국가정보학회 학술회”에 토론자로 초청되어 ‘국가정보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해 토론하였다.

◆ 김남선 연구관(교통대책연구실)은 2010년 2.19~20간 서울 신당동 소재 도로교통공단에서 개최된 대한교통학회 제62회 학술발표회에 토론자로 참석, ‘교통예측기법’과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 2월중 연구소 자체 ‘책임연구과제 발표회의’ 개최
치안정책연구소는 2월중 총 4회의 책임연구과제 발표회의를 개최, 활발한 토론을 통해 연구성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PSI](#)



※ 책임연구과제 발표내용(2010. 2월)

일시	주 제	발표자
2.1(월)	북한이탈주민 한국사회 적응 문제점과 개선방안	송경호
2.8(월)	북한급변사태시 경찰의 대응방안	유동열
2.17(수)	종교적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방안	최경환
2.22(월)	청소년 게임범죄에 관한 연구	김학신

◆ 치안정책연구소 소개

치안정책연구소는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 경찰이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의 치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생산해 내는 산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경찰연구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경찰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찰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비전 수립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연구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연구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치안관련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최신 국내외 연구자료의 DB(데이터베이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치안정책연구 토대의 확충과 해외 치안정책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에도 힘을 기울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치안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적실성 높은 연구성과 창출로 치안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한국경찰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치안정책분야의 세계 최고 연구기관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PSI](#)

◆ 치안정책연구소 부서별 업무

부서	담당 업무
정책기획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기 치안수요 예측 및 대응방안 수립 기획정책개발·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감사정보통신·홍보 분야 등에 관한 연구 총무행정·보수·후생복지 등에 관한 연구
사회안정 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정보활동 및 국내 사회안정 대책 연구 경찰 경비활동 및 대테러 대책 연구
안보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을 대비한 치안분야의 연구 남북교류 및 북한이탈주민 관리방안 연구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연구·분석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및 발전방안 연구
생활안전 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예방 및 소년·여성범죄에 관한 연구 경찰외근, 민간경비 업무 등 중장기 생활안전 대책 연구
교통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교통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교통업무전반의 효율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
범죄수사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수사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범죄분석 및 범죄수사에 관한 연구
수사구조 개혁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기 수사구조개혁 방안에 관한 연구 수사경찰제도 및 수사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운영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서, 보안, 인사 등에 관한 사항 회계, 청사유지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소 홈페이지 및 자료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연구소내 서무와 다른 연구실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연구소 중장기 발전계획 및 홍보업무 연구계획 수립관리 및 세미나 개최에 관한 사항 간행물의 인쇄·배포에 관한 사항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등 섭외 업무

치안정책연구소 조직도

